

의료법			번호: IV - B - 2			
제 목	국문	보건의료법률의 윤리적 검토-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영문	The Moral Estimate of Korean Medical-Health Law				
저 자 및 소 속	국문	유호종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문	Yu Ho Jong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 표 자	유호종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중					
<p>1. 연구목적</p> <p>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우리 보건의료법률의 이념 및 지향을 파악한다. 또한 이 법률들을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p>						
<p>2. 연구방법</p> <p>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p>						
<p>3. 연구결과</p> <p>(1) 법과 윤리의 관계</p> <p>어떤 실정법에 대해 윤리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과 윤리의 관계부터 분명해 해야 한다. 법과 윤리는 둘 다 규범 지시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 인간은 한 순간에 한 행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그런데 '법'과 '윤리'를 더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각각 '실정법'과 '진정한 도덕'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법이 아닌 윤리이다. 어떤 행위가 참된 의미로 '윤리적이다'는 것은 이미 '그 행위는 해도 된다'거나 더 나아가 '그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반면 '어떤 행위가 실정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을 함축하지 못한다. 그것은 현행 법률 중에는 윤리적으로 그른 것이어서 그런 법률에 의거하거나 부합하는 행위 역시 윤리적으로 그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p> <p>(2) 윤리적으로 정당한 법과 그렇지 못한 법의 구분 기준</p> <p>크게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려한 법은 정당하다'는 내용적 정당성과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진 법은 정당하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이야기된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은 내용적 정당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 이것을 드러내는 최선의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둘이 괴리를 보일 때가 있다. 이 때 그 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가 문제된다.</p> <p>법의 내용적 정당성의 요소는 효율과 정의(형평)으로 분석될 수 있다. 효율을 갖추게 하는 법이어야 전체 결과를 좋게 할 수 있고 정의(형평)을 갖추게 하는 법이라야 이 전체 결과가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p>						

(3)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는 건강에 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모든 보건의료법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인정했을 때 이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의 주체가 필요하다. 그 의무 주체는 일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다음은 보건의료인이다. 즉 보건의료인은 그들 직종의 영업 내지 활동의 자유(권리)에 의해 우선 규정되는 직종이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라는 책임에서 우선 규정되는 직종이다. 그래서 보건의료인에게는 다른 직종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금지의 의무' '다른 의료기관의 소개 및 자료제공의무' 등이 부여된다.

그리고 이들 주체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잘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제도나 운영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의료의 형평성' '의료의 효율성' '의료의 발전'이다. 그래서 의료의 형평성을 위해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게 분포되도록 하고 노인 장애자를 특별히 돌보는 등의 법령조항이 마련되었다. 다음 의료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요 보건의료 취약 분야나 사람들 을 중점 관리하며 미리 예방에 노력하는 등의 조항이 마련되었다. 의료 정보화 역시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다음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5년 단위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그만큼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해 의료 쪽의 발전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보았을 때 보건의료기본법은 전체적으로 정당한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합의를 모았다고 볼 수 없는 내용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 등의 문제점도 있어 이를 고쳐 나가는 노력이 요망된다.